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1. 2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99. 12.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빙준)

가. 제안이유

-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비지대부료심의위원회를 섞의 내용이 유사한 자가심의위원회인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와 통합운영으로 낭비적인 요인 제거.
- 체비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와 우리 시만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제정시 목적이 미매각 체비지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를 유도하고 매각 시점까지의 대부료 징수로 시세수입 증대 및 무단점유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1995. 6. 19 조례 제1358호) IMF 이후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 유도가 어려우며 대부료 체납만 누적되고 있어
- 현실적으로 대부분 20~40년 된 구옥들로 저소득영세시민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 포기가 어려운 가운데 납부능력한계로 인하여 "체비지대부료의 부당한 부과징수"에 관한 청원이 제73회(임시회)에서 채택되어 2004년까지 유예기간을 둘으로써 체비지 점유자의 자활의욕을 복돋아 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부료 등 부과심의회를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 2004년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부과유예기간을 둠(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의결년월일	1999. 12. 24 (제75회)

제출년월일 : 1999. 11. 24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비지대부료심의위원회를 심의 내용이 유사한 지가심의위원회인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와 통합운영으로 낭비적인 요인 제거.

○ 체비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와 우리 시만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증징수조례 제정시 목적이 미매각 체비지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를 유도하고 매각 시점까지의 대부료 징수로 시세수입 증대 및 무단점유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1995. 6. 19 조례 제1358호) IMF 이후 점유자에게 조기 매수 유도가 어려우며 대부료 체납만 누적되고 있어

○ 현실적으로 대부분 20~40년 된 구옥들로 저소득 영세시민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 포기가 어려운 가운데 납부능력한계로 인하여 “체비지대부료의 부당한 부과징수”에 관한 청원이 제73회(임시회)에서 채택되어 2004년까지 유예기간을 둘으로써 체비지 점유자의 자활의욕을 복돋아 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부료 등 부과심의회를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안 제10조)

- 2004년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부과유예기간을 둠(안 제12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체비지대부료등부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를 “부천시토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통합 운영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공무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를 “운영회 운영 및”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대부료·변상금부과 유예기간) 대부료 및 변상금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유예기간을 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비지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동조례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토지평가업무담당·체비지업무관련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된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u>체비지대부료등부과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된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u>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통합 운영한다.

②(생략)

③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공무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소설)

제12조(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대부료·변상금부과 유예기간) 대부료 및 변상금을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과유 예기간을 둔다.

제13조(현행과 같음)